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(남창진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032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8월 14일

발 의 자: 남창진 의원(1명)

찬 성 자: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
곽향기, 김경훈, 김규남,
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
김영철, 김용일, 김용호,
김원중, 김원태, 김재진,
김지향, 김춘곤, 김태수,
김형재, 김혜영, 남궁역,
문성호, 민병주, 박상혁,
박 석, 박성연, 박영한,
박춘선, 박철성, 박환희,
서상열, 소영철, 송경택,
신동원, 신복자, 옥재은,
왕정순, 유정인, 윤기섭,
윤영희, 윤종복, 이봉준,
이상욱, 이숙자, 이원형,
이은림, 이종태, 이효원,
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
채수지, 최민규, 최유희,
최진혁, 한 신, 허 훈,
홍국표, 황유정, 황철규
의원(60명)

1. 제안이유

- 최근 결혼연령이 높아지고 의료시술을 통한 다태아 출산이 늘어남에 따라 다태아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장이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가함. (안 제4조의6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모자보건법 ,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

다. 기타 : 신 구조문대비표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6(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6(다태아 임신부 등에 대한 지원) 시장은 다태아(多胎兒) 임신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임신·출산 및 다태아로 태어난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·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</u>